

## *The Review of Korean Studies* 저술 연구 윤리

제1조(목적) 본 연구윤리는 본원 영문학술지 *The Review of Korean Studies*(이하 “RKS” 라고 한다)를 통해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자의 연구윤리의 확립,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RKS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) <신설 2018.11.01.>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(원내), 위원 4인(원내2인, 원외2인)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임명한다(현직 및 전직 RKS 편집위원은 구성에서 제척한다).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간사는 편집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할 경우 관계자 출석, 의견 개진, 소명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1. 연구윤리·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2.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 3.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 판정, 승인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
  4.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  5. 연구진실성 검증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 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연구부정행위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.

1. 학술지, 단행본,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술, 자료 등을 인용부호, 각주, 내용 주,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. <2018.11.01.>
2.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,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또는 생성자의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. <2018.11.01.>

②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.

1.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*RKS*에도 게재한 경우. <2018.11.01.>
2. *RKS*에 게재한 논문의 내용중, 본인의 과거 여타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‘연속된 다섯 개 이상의 문장’ 을 전재했으나 인용을 하지 않은 경우. <2018.11.01.>

③ 다음의 각 사항 역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. <신설 2018.11.01.>

1.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제작하는 행위 (위조)
2. 연구 관련 자료, 과정, 결과를 사실과 달리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(변조)
3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기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감사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(부당한 논문저자 표시)
4. 이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행위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
제4조(제보내용 심의 및 처리 절차) ① 편집위원장은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대

한 실명 또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할 경우 즉시 윤리위원장에게 통지하며, 윤리위원장은 통지를 받은 직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. <신설 2018.11.01.>

②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의 제보수령일로부터 15일 안에 조사위원을 확정하여 조사에 착수하며, 조사위원들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다(1회에 한해 15일의 심의기간 연장 가능). <신설 2018.11.01.>

③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은 당연직 조사위원이 되며, 제보된 사안에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 원외 인사 1-2인을 추가로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. <신설 2018.11.01.>

1. 윤리위원회는 조사개시 이전, 당연직 조사위원 중 ‘제보된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’를 확인해 조사에서 배제한다. 다음 윤리위원회 간사는 확정된 조사위원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며,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각기 1인에 한해 기피(배제요청)한 조사위원 역시 조사에서 배제된다.

2. 조사위원의 수는 어떤 경우에도 5인을 유지하며, 당연직 조사위원 중 배제된 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수만큼의 원외 조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.

3. 당연직 조사위원은 조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.

④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 <신설 2018.11.01.>

1. 제보자와 관련해서는 신원 보호(원칙상 비공개)를 포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(허위 제보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), 피조사자에 대해서도 그 혐의가 사실로 판정되기 전에는 권리침해 최소화 및 인격권 존중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.

2.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변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. 다만 당사자의 위원회 출석이 요망될 경우의 의무는 달리 부과

다(제보자나 참고인은 서면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). 아울러 필자는 관련자료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사본 생성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.

- ⑤ 조사결과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.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, 윤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심의해 5일 내에 재통지한다. <신설 2018.11.01.>

제5조(제재) ① 연구부정행위의 수위와 맥락이 비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게재된 논문의 취소를 편집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. 편집위원회가 논문 취소를 결정할 경우,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이 사실을 RKS를 통하여 공지하며 당사자들에게도 통지한다. <신설 2018.11.01.>

-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받은 연구자의 RKS 투고(공동, 단독)를 일정기간(1-3년) 제한할 것을 편집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8.11.01.>

제6조(기타) ①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간사의 관리 아래 10년간 보관한다. <신설 2018.11.01.>

-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.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는 정당한 사유,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
- ③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

다.

- ④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 및 정  
신문화연구 연구윤리지침, 기타 한국연구재단 윤리관련 방침 등을 적용한다.

<신설 2018.11.01.>